

# 기 안 용 지

간계용도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분류기호<br>서번호 | 1월 124-104 (전파번호 75-6827) | 전결규정<br>국장 | 18 조 2항<br>전결사항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
지리기관 ~~국립중앙도서관~~ **국립중앙도서관**

시행일자 ~~1989. 11. 10~~ **1989. 11. 10**

보존년 ~~10~~ **10**

|   |       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 | 국립중앙도서관 |  |  |  | 협<br>협우당장<br>시인과장<br>원자과장<br>정지과장 |
| 조 | 환지1과장 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 |       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 |       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기안책임자 **유용환** **75-1 국 용 봉**

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경수<br>관 | 유신<br>조 | 각<br>안 | 참<br>조 | 발<br>신 | 봉<br>계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
해 목 **중구및융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(기간연기)인가공고**

**제 1안 내무결재**

1. 건설부공고제 1호 (72.2.19) 및 건설부공고제 105호 (69.10.1)로 인  
 된 융합및중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으로부터 사업기간 연기 요청이 있어 76.  
 12.13 자서물 특별시공고 제 26호로 융합에 공하고 76. 12. 27자 서물  
 변경(기간연기)인정하와

2. 건설부공고 제 2호 (75.1.9)로 사업변경 인가 되었기 그 내용  
 을 토지구획조합 및 이해관계인에게 증합이 용해된 변화와 같이 설명

정 서  
인  
관  
인  
발  
송

0201-1-8A

190mm×268mm 배상지4207/m2

1989. 11. 10. 승인

1490

제 2안

2. 신용공고

가. 공고 목적: 서울특별시 공고제 호

나. 공고 내용: 용보성이 의뢰 계약 (조간 및 석간)

다. 소요 예산: 2달 x 40행 x 2개사

라. 지출 비목: 흥남, 동구 조합 부합

마. 지출 방법: 동구 조합에 의뢰

|     |        |
|-----|--------|
| 공고안 | 5/11/7 |
| 접자  |        |
|     |        |

제 2안

서울특별시 공고제 호

흥남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(기간연기) 시행 인가 공고

1. 흥남 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인가 (같은 공고제 호로, 간: 1.9)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제 31조 및 제 12조와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발공고 한다.

2. 한지도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관리제 1과 및 흥남 동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비치하고 권리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3. 변경 사항 (시정기간연기)

| 구분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구자 | 1969.10.1 ~ 1974.12.31 | 1969.10.1 ~ 1975.12.31 |
| 흥남자 | 1972.2.9 ~ 1974.12.31  | 1972.2.9 ~ 1975.12.31  |

1975. 1  
서울특별시 장

제 3안

수신: 홍남(홍북) 토지구획 정리사업조합장 귀하. 발송: 시장  
제목: 등 건

1. 귀조합에서 요청한 홍남(홍북) 토지구획 정리사업 변경(기간변경)에 대하여는 별첨 건설부장관 응고문서본 및 응고문서와 같이 인가되어서 서울시공고제 호 ( ) 와 같이 실시 변경 공고하였기 돌보하여 귀조합에 비치하고, 이를 관계인의 용량에 응할 것이며

2. 건설부장관 지시 사항과 같이 사업수행 기간의 빈번한 연기는 자구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므로 위의 사업기간내에 반드시 사업공편을 특할 것.

첨 부. 건설부장관 응고문서본(건설부공고제 2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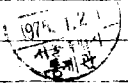
2. " 응고문서 1부(도제 432.4-21)

3. 서울특별시 응고 호 부

제 4안

수신: 서대문구청장, (상동구청장) 발송: 시장

제목: 등 건



1. 홍남(홍북)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75.1.9 (건설부공고제 2호)로 사업 변경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 변경 응고를 하였는데 본사업 상유권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 글.

제 5안

수신: 응보실장 발송: 과감

제목: 선문 및 시보 게재 의뢰

1. 홍남(홍북)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 변경 계획을 별첨 건설부장관 응고문서본 및 서울시공고제 호 (35-1) 와 같이 실시 조치하여 일간지(조간 및 취간) 및 시보에 게재 하려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산액 : 2면 x 40행 x 4000 x 2개사 = 64,000

나. 예산비목: 공무, 홍남조합 부합

첨 부: 공보실 인 사부.